



EU,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정 및 정리제도 도입

김혜란 연구원

요약

유럽 의회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SolvencyII) 개정안과 정리제도지침(IRRД)을 도입하기로 함. SolvencyII 주요 개정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 완화, 장기투자 처리 방식 수정, 비례성 개선, SolvencyII의 기본을 훼손하는 변경 사항 도입 금지 그리고 지속가능성 보고 등임. EU 내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 및 관련 기관의 위기 대처 규정인 IRRД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선제적으로 회복 계획을 개발 및 유지해야 하며, 효과적인 정리 수단을 보유해야 함

○ 유럽 의회는 2023년 12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SolvencyII) 개정안과 정리제도지침(Insurance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이하 'IRRД')을 도입하기로 함¹⁾

- SolvencyII 개정 논의 배경에는 EU 집행위원회의 SolvencyII 검토에 대한 법적 의무와²⁾ 보험산업이 코로나19 이후 유럽 경제 회복 및 그린딜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³⁾
- 2021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SolvencyII 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SolvencyII의 기본 지침은 유지하되, 특정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제안하였으며⁴⁾, 2022년 6월 유럽 의회에서 개정 초안을 제출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SolvencyII 개정에서 소규모 및 저위험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의무 감소, 장기 및 기후 위험 고려, 그룹 및 국경을 넘어서는 감독 강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함
 - 이 제안은 유럽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2022년 6월 유럽 의회 내 경제통화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ECON)에서 규정 개정안 제출되었음

○ SolvencyII 주요 개정 내용은 1)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 완화, 2) 장기 투자 처리 방식 수정, 3) 비례성 개선, 비용 및 운영 부담 증가 방지, 4) SolvencyII의 기본을 훼손하는 변경 사항 도입 금지, 5) 지속가능성 보고 등임⁵⁾

- 보험회사들의 위험마진(risk margin)이 과도하여 가용자본이 과소 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비용률(cost-of-capital rate)을 6%에서 4.5%로 낮춤
 - 위험마진은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데 드는 잠재적인 비용으로, 보험회사가 헛지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 이하 'SCR')에 자본비용률을

1) EC(2023. 12. 14), "Insurance: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s on the review of EU insurance rules"

2) EC(2021. 9. 2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9/138/EC"

3) EC(2021. 9. 22), "Insurance rules' review: encouraging solid and reliable insurers to invest in Europe's recovery"

4) European Parliament(2023. 10. 2), "Proposal amending the SolvencyII Directive"

5) Insurance Europe(2023. 9), "SolvencyII Review key messages ahead of trilogues"

급한 금액임

- 그러나 자본비용률은 영국과 일본에서 목표로 하는 4%와 3%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임
- 장기 및 보장성 상품의 비용 증가 및 변동성 증가를 피하기 위해서, 무위험이자율 곡선의 '수렴 매개 변수' 유로화에 대해 15% 이상으로 설정하고, 요구자본이 과도하지 않게 장기 주식투자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 자본비용이 22%가 되도록 위험계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 저위험 프로필 기업(low risk profile undertakings, 이하 'LRPU') 카테고리 도입하여, LRPU를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특정 부분 규제를 줄임으로 비례성을 개선함
 - LRPU는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에 새로이 도입되는 기후변화 위기상황분석 등을 면제함
- 내부 모형 사용 보험회사에 대한 현재 보고 사항을 변경하지 않으며, SolvencyII의 기본을 훼손하는 변경 사항의 도입을 금지함
 - 내부 모형을 사용하는 보험회사에게 표준 공식으로 계산된 SCR 추정치를 정기적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추가하면 표준 공식으로 계산된 SCR 추정치가 내부 모형을 약화시키고, 비용도 증가하게 됨
- 기후 관련 자연재해 위험의 표준 공식 매개 변수 범위 및 보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며, ORSA에 기후변화 위기상황분석을 도입하고, 보험회사 개별 기후변화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공개하지는 않음

○ IRRD는 EU 내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 및 관련 기관의 위기 대처 규정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함⁶⁾

- 규모가 크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 회복 계획 및 정리 수단을 수립해야 함
 - 규정에 의하면 EU 회원국마다 보험회사의 60%는 선제적으로 회복 계획안을 개발·유지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40%는 효과적인 정리 수단을 보유해야 함⁷⁾
 - 2017년 EIOPA는 SolvencyII를 도입하면서 SolvencyII 규정과는 별도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기준에 미치지 못함이 관찰되기 전에 예방적으로 회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음
 - 이는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을 준수하지 못함이 관찰된 2개월 이내에 SCR을 충족시켜야 하는 SolvencyII와는 다름
 - 정리 수단으로는 사업 매각,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에 임시 이전, 자산 및 부채를 분리하여 처분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이로써 회원국들은 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질서 있는 방식으로 파산한 보험회사를 정리할 수 있음

○ Solvency II 개정으로 EU 회원국들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⁸⁾

- 최대 1,000억 유로(약 1,088억 달러)가 추가로 투자될 수 있으며, 이는 EU 총생산의 약 0.6%에 해당하는 금액임

6) EC(2023. 12. 14), "Insurance: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s on the review of EU insurance rules"

7) Linklaters(2023. 12. 19), "EU SolvencyII and IRRD: Negotiators reach political agreement"

8) Reuters(2023. 12. 14), "EU agrees to ease capital rules for insurers to boost investment"